

OECD 뇌물방지작업반 10월 정례회의

I. 회의개요

- OECD 뇌물방지작업반 10월 정례회의가 2011.10.11~14 OECD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2010년 10월에 3단계 평가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 보고 및 신규 회원 합의를 이루어짐.

II. 주요내용

-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금년 4월부터 준비된 우리나라의 3단계 이행평가보고서와 보도자료 포함 내용 합의에 대해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에 ‘주목할 만한 진전(notable progress)’이 있었다 평가하며,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2012년 및 2013년 까지 각각 추가 구두 및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권고함.
- 멕시코는 이행 법제가 불충분하고 실제 사례가 적어 진전을 평가하면서도 협약 이행을 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단 권고를 받음.
- 핀란드, 미국, 캐나다의 3단계 평가 후속조치 보고
 - 핀란드 : 관련 이행 결과 보고
 - 미국 : 소액뇌물 관행 등을 포함한 민간 기업들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및 민간과 의회를 통한 뇌물방지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노력 보고
 - 캐나다 : 실제 판결사례 발표 및 자국의 협약 이행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자체평가 보고
- 뇌물방지작업반은 콜롬비아를 신규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는 한편, 작업반 맨데이트 개정 및 작업반의 위원회 지위로의 승격에도 합의한바,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III. 관찰 및 평가/건의

- 금번 작업반은 우리 정부의 협약이행 의지와 이행을 위한 각종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간 9개 사례의 처리를 통해 뇌물사건의 감지, 수사, 판결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공제공조와 일관성 있는 체제를 위한 추가 이행 및 새로운 조치들을 권고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함.
- 우리 기업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예방을 위해 국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인들에게 금번 보고서의 내용을 알리고,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 및 사후대응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건의.